

파주시 고시 제2024-161호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120호(2008.09.22.)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되고, 파주시 고시 제2018-157호(2018.07.2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파주시 고시 제2020-133호(2020.05.22.)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되고, 파주시 고시 제2022-148호(2022.05.20.)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제2023-380호(2023.11.03.)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누락 및 오기가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 3. 29.

파 주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명칭 :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
- 면적 : 54,033.30㎡(공부상 53,979.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시행자 :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이원영)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9, 2층(금촌동, 삼영빌딩)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 없음)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변경 없음) : 2018년 7월 24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 별첨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용도
38,990.00	155,426.5365	20.32	283.65	86.10 (지하2층~지상30층)	공동주택(10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

구분		공급면적			세대수	비율(%)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조합(임대)	39형	39.5822	22.1021	61.6842	61	5.03
	소계	2,414.5142	1,348.2281	3,762.7423	61	5.03
조합(분양)	39형	39.5822	22.1021	61.6843	2	0.16
	59A형	59.9073	22.2244	82.1317	27	2.23
	59B형	59.8310	23.2531	83.0841	19	1.57
	74형	74.8063	21.7673	96.5736	13	1.07
	84형	84.9670	21.9898	106.9568	142	11.71
	소계	15,871.2464	4,491.5984	20,362.8448	203	16.74
공공지원 민간임대	39형	39.5822	22.1021	61.6843	122	10.06
	59A형	59.9073	22.2244	82.1317	217	17.89
	59B형	59.8310	23.2531	83.0841	199	16.40
	74형	74.8063	21.7673	96.5736	275	22.67
	84형	84.9670	21.9898	106.9568	136	11.21
	소계	61,862.5260	21,123.1382	84,357.2802	949	78.23
총 계		80,148.2866	26,962.9647	107,111.2513	1,213	100.00

※ 변경사유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른 변경

9.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	4,958.90㎡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자 설치 후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1,775.30㎡		
문화공원	2,185.50㎡		
녹지	2,213.10㎡		
주차장	1,322.300㎡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변경 없음)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11. 기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 등 관계 도서는
과주시청 주택과 재개발팀(☎031-940-4775) 및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031-946-392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